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15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 우재준 · 김위상 · 이달희

서범수 • 권영진 • 김소희

이성권 · 임이자 · 정동만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 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 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 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 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 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또는 대중문화예술인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킨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 ③	제3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
	화예술제작물스태프 또는 대중
	문화예술인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
	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
	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
	화예술제작물스태프 또는 대중
	문화예술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또는 대중
	문화예술용역 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1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
	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킨 자
<u>2.</u> ~ <u>9.</u> (생 략)	<u>3.</u> ~ <u>10.</u> (현행 제2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